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발 의 자: 김영옥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
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성연,
박영한, 서호연, 신복자,
윤영희, 이경숙, 이상욱,
이영실, 이종환, 임만균,
정준호, 최민규, 홍국표,
황유정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영아가정의 양육현실을 고려한 돌봄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,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으로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. (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)
- 나.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을 수행을 위해 자치구, 법인 및 기관, 단체 등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제2항)
- 다.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의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,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
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, 법인 및 기관, 단체 등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돌봄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,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<u>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, 비영리법인 및 기관,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돌봄 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 용권 지급 사업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, 법인 및 기관, 단체 등에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